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8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7일

발 의 자 : 김정태, 강동길, 권수정, 권영희,
김달호, 김소영, 김호평, 김희걸,
박순규, 봉양순, 송재혁, 이광호,
이병도, 이성배,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정재웅,
정진술, 채인묵,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의원 (25명)

1. 제안이유

서울연구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권한을 강화하고, 서울연구원의 주요 사업에 자치구의 행정과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4항 신설).
- 나. 서울연구원의 사업에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함(안 제3조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로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립)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제2조(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3조(사업)</p> <p>1. 시 행정 및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u></p> <p>2. ~ 5. (생 략)</p> <p><u><신 설></u></p> <p>6.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3조(사업)</p> <p>1. ----- <u>의회</u> ----- ----- -----</p> <p>2. ~ 5. (현행과 같음)</p> <p>6. <u>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로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7. ----- -----</p>
<p>제5조(이사회 등) ① 연구원에 법 제 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u>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u></p>	<p>제5조(이사회 등) ① ----- ----- ----- ----- ----- ----- <u>원장</u> -----</p>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
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
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